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4년 한눈에 보이는 **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_ 429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_ 444

03. 비관세장벽 현황_ 447

04. 수출 애로사항_ 45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_ 460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TBs, Non Tariff Barriere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기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2) 01

(1) 시장개요

♪ 시장규모

- 2023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486억 달러(한화 약 71조 4,420억 원)로 전년 대비 6.6% 성장함
 - 신선식품 시장규모는 286억 달러(한화 약 42조 420억 원)이며, 전년 대비 7.1% 증가해 전체 식품 시장의 58.8%를 차지함
 - * 육류 시장이 143억 달러(한화 약 21조 210억 원) 규모로 비중 29.4%를 차지해 신선식품 중 가장 크고, 이어서 채소류(11.5%), 낙농품(8.2%), 과일 및 견과류(8.0%), 유지류(1.6%) 순임
- 가공식품의 시장규모는 200억 달러(한화 약 29조 4.000억 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8% 증가 했으며, 전체 식품 시장의 41.2%를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가 규모 73억 달러(한화 약 10조 7,310억 원)로 가공식품 시장의 15.0%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고, 뒤이어 스낵류(12.8%), 편의식품(6.2%), 소스 및 향신료(2.9%) 순임

표 1. 식품 시장규모(2019~2023)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37.4	37.8	42.4	45.6	48.6	100.0	6.6
신선식품	21.9	22.0	24.6	26.7	28.6	58.8	7.1
- 육류	11.1	10.9	12.3	13.3	14.3	29.4	7.5
- 채소류	4.2	4.3	4.8	5.2	5.6	11.5	7.7
- 낙농품	3.0	3.1	3.4	3.7	4.0	8.2	8.1
- 과일 및 견과류	3.0	3.1	3.4	3.7	3.9	8.0	5.4
- 유지류	0.6	0.6	0.7	0.8	0.8	1.6	0.0
가공식품	15.5	15.8	17.8	18.9	20.0	41.2	5.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5.8	6.0	6.7	6.9	7.3	15.0	5.8
- 스낵류	4.6	4.7	5.3	5.8	6.2	12.8	6.9
- 편의식품	2.3	2.3	2.6	2.8	3.0	6.2	7.1
- 소스 및 향신료	1.1	1.1	1.2	1.3	1.4	2.9	7.7
- 스프레드 및 당류	1.0	1.0	1.2	1.2	1.2	2.5	0.0
- 영유아용 식품	0.5	0.5	0.6	0.6	0.6	1.2	0.0
- 펫푸드	0.2	0.2	0.2	0.3	0.3	0.6	0.0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 (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¹⁾ 환율: 1달러=1.470.00원(2025년 1월 2일, 매매기준율 기준)

^{2) &#}x27;23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STATISTA, ITC Trade Map 등)

♪ 소비인구 및 특성

- 2023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3,510만 명으로, 전년보다 1.2% 증가함
- 연령대별 인구 수는 균등한 편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0~14세 인구는 전체의 약 22.2% 수준임
- 여성 인구 수는 약 1,670만 명(약 47.6%), 남성 인구 수는 약1,840만 명(약 52.4%)으로,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음
- 2023년 가구 수는 7,60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6,900달러 (한화 약 1,014 만 원) 규모임
 -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중 식품에 소비하는 금액은 전체의 26.1%에 해당하며, 전년과 같은 수준임
- 2023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1,413.9달러(한화 약 122만 원)로 집계되었으며, 신선식품 소비액이 가공식품보다 크게 나타남
 -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1인당 832.2달러(한화 약 61만 원)로 식품에 대한 전체 지출의 58.9%를 차지함 * 육류의 비중이 29.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채소류(11.5%), 낙농품(8.2%) 순임
 - 1인당 연간 가공식품 소비액은 581.7달러(한화 약 86만 원)로 식품과 관련된 전체 지출의 41.1%에 해당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의 비중이 15.1%로 가장 크며, 이어 스낵류(12.8%), 편의식품(6.1%) 순임

표 2. 1인당 식품 소비액	(2019~202	3)				(5	<u>·</u> 위: 달러,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1,138.5	1,141.9	1,265.2	1,336.4	1,413.9	100.0	5.8
신선식품	665.8	662.0	736.0	783.9	832.2	58.9	6.2
- 육류	336.8	327.4	366.2	390.7	415.3	29.4	6.3
- 채소류	127.8	130.0	143.8	153.5	163.0	11.5	6.2
- 낙농품	91.3	93.0	102.6	109.0	115.9	8.2	6.3
- 과일 및 견과류	90.8	92.3	102.1	108.2	114.2	8.1	5.5
- 유지류	19.1	19.3	21.3	22.5	23.8	1.7	5.8
가공식품	472.7	479.9	529.2	552.5	581.7	41.1	5.3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78.0	180.5	199.0	203.2	213.0	15.1	4.8
- 스낵류	139.9	142.1	158.2	169.3	180.3	12.8	6.5
- 편의식품	69.5	70.4	77.7	82.3	86.9	6.1	5.6
- 소스 및 향신료	32.4	32.8	36.2	38.3	40.4	2.9	5.5
- 스프레드 및 당류	31.2	31.3	34.3	34.3	35.3	2.5	2.9
- 영유아용 식품	15.7	16.3	16.9	17.7	18.2	1.3	2.8
- 펫푸드	6.0	6.5	6.9	7.4	7.6	0.5	2.7

^{*} 출처: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량은 전체적으로 증가함. 주요 품목 중 채소류가 소비량 75.3kg으로 가장 크며, 이는 전년 대비 3.7% 증가한 양임
 - * 육류 소비량은 45.6kg, 낙농품 36.7kg, 과일 및 견과류 30.8kg, 유지류 3.7kg 수준으로 소비됨
- 가공식품 중에서는 2023년 1인당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량이 123.7kg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 대비 2.4% 증가함
 - * 그다음으로 스낵류 소비량이 28.2kg, 편의식품 18.7kg, 소스 및 향신료 12.4kg, 스프레드 및 당류 11.5kg 순으로 집계됨

丑3.	1인당 식품 소비량(2019	9~2023)					(단위: kg,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전년대비 증감률
	- 채소류	65.9	67.5	70.1	72.6	75.3	3.7
	- 육류	40.3	40.4	42.6	43.8	45.6	4.1
신선 식품	- 낙농품	31.5	32.5	33.8	35.1	36.7	4.6
	- 과일 및 견과류	27.7	28.3	29.1	29.9	30.8	3.0
	- 유지류	3.3	3.4	3.5	3.6	3.7	2.8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5.4	117.8	121.2	120.8	123.7	2.4
	- 스낵류	24.7	25.1	26.1	27.1	28.2	4.1
	- 편의식품	16.7	17.1	17.6	18.1	18.7	3.3
가공 식품	- 소스 및 향신료	11.2	11.4	11.7	12.1	12.4	2.5
	- 스프레드 및 당류	11.3	11.5	11.8	11.4	11.5	0.9
	- 펫푸드	4.3	4.3	4.2	4.3	4.3	0.0
	- 영유아용 식품	0.9	0.9	0.9	1.0	1.0	0.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2) 수출입현황

♦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3년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69억 9,455만 3,000달러(한화 약 39조 6,820억 원)로 전년 대비 19.2% 감소함
 - 주요 수출국은 싱가포르(11.6%), 중국(9.7%), 인도(9.4%) 등이 있으며, 아시아 외 여러 권역에 수출 하고 있음
 - * 對싱가포르 수출액은 31억 3,439만 1,000달러(한화 약 4조 6,076억 원)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7.7%씩 성장함
 - * 對중국 수출액은 26억 690만 1,000달러(한화 약 3조 8,321억 원)로 전년 대비 24.7% 감소했으나, 이는 5개년 연평균 4.3%씩 증가한 규모임
 - * 對인도 수출액은 25억 4,362만 5,000달러(한화 약 3조 5,391억 원)로 전년 대비 31.2%로 크게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4.7%의 성장률을 기록함

丑	4. 국가별 농	식품 수출현홍	탈(2019~202	23)				(단위 :	천 달러, %)
							ᄪ	증감	각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9,845,927	21,440,402	28,705,362	33,426,998	26,994,553	100.0	-19.2	8.0
1	싱가포르	2,333,302	2,332,265	2,630,540	2,871,893	3,134,391	11.6	9.1	7.7
2	중국	2,206,233	2,714,386	3,106,595	3,461,562	2,606,901	9.7	-24.7	4.3
3	인도	2,119,946	1,795,943	3,880,972	3,697,358	2,543,625	9.4	-31.2	4.7
4	일본	778,048	747,617	959,773	1,306,128	1,145,658	4.2	-12.3	10.2
5	튀르키예	590,253	632,694	1,009,267	1,278,679	1,012,909	3.8	-20.8	14.5
6	네덜란드	717,278	1,169,983	1,844,391	1,873,067	994,778	3.7	-46.9	8.5
7	필리핀	740,127	832,904	1,070,452	1,467,095	941,081	3.5	-35.9	6.2
8	케냐	120,318	356,197	861,058	944,271	765,216	2.8	-19.0	58.8
9	베트남	705,791	632,837	886,766	889,840	748,631	2.8	-15.9	1.5
10	인도네시아	598,120	475,403	600,460	742,170	731,541	2.7	-1.4	5.2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출 품목은 기타 팜유(32.9%)이며, 이외 팜유(조유), 식물성 지방 분획물, 동·식물성 유지 등 다양한 가공식품이 주로 순위 상위권에 위치함
 - * 기타 팜유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8.9% 감소한 88억 9,055만 8,000달러(한화 약 13조 691억 원) 규모로 집계됨
 - * 팜유(조유) 수출액은 30억 2.424만 달러(한화 약 4.456억 원)로 전년 대비 32.8% 급감했으며, 전체 수출의 11.2%를 차지함
 - * 그다음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은 식물성 지방 분획물(7.2%), 동·식물성 유지(3.4%), 조제식료품 (3.4%) 등이 있음

표 5.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9~2023)

(단위 : 천 달러, %)

							띠ᄌ	증감	' 남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9,845,927	21,440,402	28,705,362	33,426,998	26,994,553	100.0	687.7	8.0
1	팜유 (기타)	6,469,974	6,850,934	9,257,741	12,507,484	8,890,558	32.9	-28.9	8.3
2	팜유 (조유)	1,862,350	2,934,139	4,954,295	4,498,802	3,024,249	11.2	-32.8	12.9
3	식물성 지방 분획물	1,497,887	1,640,497	2,265,546	2,898,832	1,933,102	7.2	-33.3	6.6
4	동·식물성 유지	202,369	359,163	741,950	942,520	914,497	3.4	-3.0	45.8
5	조제 식료품	675,922	679,047	811,791	922,535	904,575	3.4	-1.9	7.6
6	맥아 추출물 (기타)	511,283	512,130	544,668	611,630	721,749	2.7	18.0	9.0
7	빵(기타)	457,738	330,368	506,095	618,276	668,000	2.5	8.0	9.9
8	코코아 버터	613,366	599,335	604,874	615,039	583,708	2.2	-5.1	-1.2
9	마가린 기타	384,975	352,442	497,889	633,851	501,486	1.9	-20.9	6.8
10	코코아 가루	275,292	294,597	355,681	394,541	407,791	1.5	3.4	10.3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3년 농식품 수입액은 209억 4,921만 5,000달러(한화 약 3조 7,953억 원)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8.2% 성장함
 - 주요 수입국은 전체의 11.2% 비중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이며, 그다음으로 중국(9.8%), 태국(9.8%), 인도(7.7%) 순임
 - * 인도네시아산 농식품 수입액은 23억 5,419만 5,000달러(한화 약 3조 4,607억 원)로 전년 대비 29.2%로 대폭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 9.0%로 증가세를 보임
 - * 중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20억 6,099만 7,000달러(한화 약 3조 297억 원)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으나, 5년간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기록함
 - 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억 9,661만 5,000달러(한화 약 2,890억 원)로 전체 수입의 0.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13.8% 증가했지만 순위권 밖임

표 6.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9~2023) (단위: 천 달러, %) 구분 (23)('23/'22) | ('19~'23) 15.300.225 16.295.004 19.974.162 22.776.604 20.949.215 100.0 -8.0 전체 8.2 1 인도네시아 1.670.017 1.993.205 2.870.120 3.322.994 2.354.195 11.2 -29.2 9 0 1.642.432 1.919.684 1.923.514 2.121.677 2.060.997 9.8 -2.9 5.8 2 중국 3 태국 1.278.517 1.065.325 1.670.714 2.014.946 2.049.054 98 17 125 인도 883.826 1.158.817 1.747.120 1.608.538 7.7 -79 16 1 4 1.461.127 7.3 8.7 아르헨티나 1,093,127 1,221,994 1,649,178 1,854,702 1,528,010 -17.6 838,565 6 호주 877.014 1.183.055 1.492.960 1.303.701 6.2 -12.7 10.4 7 브라질 622 756 882 086 1.059.104 1.006.766 1.237.060 59 229 187 1,263,157 1,184,325 1,361,844 1,322,845 895,357 4.3 -32.3 -8.2 8 미국 553.913 696.380 38 -0.9 87 9 싱가포르 572.401 806.331 799.387 3.5 10 뉴질랜드 627.046 608.745 596.180 818.471 727.750 -11.1 3.8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은 코코아두(7.1%)이며 이외 쌀 등의 곡류와 소나 닭 등의 육류.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함
 - * 코코아두 수입액은 14억 9,437만 5,000달러(한화 약 2조 1,967억 원)로 전년 대비 39.7%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됨
 - * 기타 사탕수수당의 수입액은 10억 9.188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6.051억 원)로 전년 대비 34.8% 증가했으며, 전체 수입의 5.2%를 차지함
 - * 이어서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은 조제식료품(4.2%), 정미된 쌀(3.9%), 대두유 추출 유박(3.5%) 등으로 비교적 차이가 근소함

丑	7.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	019~2023)					(단위 : 천	선 달려, %)
							ui즈	증감	ᢛ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5,300,225	16,295,004	19,974,162	22,776,604	20,949,215	100.0	-8.0	8.2
1	코코아두	826,877	973,398	1,209,606	1,069,971	1,494,375	7.1	39.7	15.9
2	사탕수수당(기타)	567,107	715,789	813,113	809,983	1,091,885	5.2	34.8	17.8
3	조제식료품	690,382	747,696	1,002,705	1,054,579	872,998	4.2	-17.2	6.0
4	쌀(정미)	450,087	581,348	566,099	597,080	816,826	3.9	36.8	16.1
5	대두유 추출 유박	521,116	520,347	629,281	783,724	740,628	3.5	-5.5	9.2
6	옥수수(기타)	477,434	439,574	629,081	680,646	704,640	3.4	3.5	10.2
7	팜유(기타)	92,950	314,755	1,003,413	1,265,687	694,883	3.3	-45.1	65.4
8	냉동 쇠고기	417,709	466,282	504,102	652,483	613,669	2.9	-5.9	10.1
9	밀(기타)	290,855	286,002	331,478	525,065	558,784	2.7	6.4	17.7
10	절단한 냉동 닭고기	158,005	140,760	185,098	353,092	428,212	2.0	21.3	28.3

^{*} 주1: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농식품 수출현황

- 2023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수출액은 2억 1.096만 1,000달러(한화 약 3.101억 원)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함
- 전체 수출액 비중의 84.5%를 농산물이 차지하며 축산물, 임산물 순으로 뒤따름
 - * 농산물 수출액은 1억 7,820만 5,000달러(한화 약 3,101억 원)로 집계되어 규모가 전년 대비 14.0%,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3.8%를 기록함
 - * 임산물은 수출액이 689만 3.000달러(한화 약 101억 원)으로 가장 규모가 작으나, 전년 대비 가장 규모가 급증함, 반면, 축산물은 3개 중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인 107.3%을 달성함

^{*} 출처: ITC Trademap(www.trademap.org)

표 8.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규모(2019~2023)

(단위: 천 달러, %)

			비즈		증감	불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비중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08,976	133,280	181,809	180,343	210,961	100.0	17.0	18.0
농산물	106,174	122,457	163,668	156,361	178,205	84.5	14.0	13.8
축산물	1,401	7,826	17,293	23,014	25,863	12.3	12.4	107.3
임산물	1,401	2,997	848	968	6,893	3.3	612.1	48.9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라면, 기타 조제식료품, 기타 소의 지방, 옥수수 전분, 인스턴트 커피 등이 있음
 - * 라면 수출액은 4,470만 2,000달러(한화 약 657억 원)로 전년 대비 51.4% 증가함
 - * 기타 조제식료품의 2,420만 3,000달러(한화 약 356억 원)로, 전년보다 10.0%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7.5% 성장함
 - * 기타 소의 지방은 전년 대비 증기율과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53.1%, 163.5%로 가장 급성장함

표 9.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수출 상위 5개 품목(2019~2023)

(단위: 천 달러, %)

							비중	증감	각률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ਠ ('23)	전년비 ('23/'22)	연평균 ('19~'23)
	전체	116,648	143,179	198,407	192,535	226,192	100.0	17.5	18.0
1	라면	16,497	19,185	27,713	29,520	44,702	19.8	51.4	28.3
2	조제식료품 (기타)	12,684	17,346	39,315	22,012	24,203	10.7	10.0	17.5
3	소의 지방 (기타)	0	884	5,485	6,393	16,181	7.2	153.1	163.5
4	옥수수 전분	9,073	8,040	8,639	8,614	10,434	4.6	21.1	3.6
5	인스턴트 커피	3,703	4,895	6,034	4,951	5,508	2.4	11.3	10.4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할랄인증 취득	 말레이시아로 육류·유제품을 수출할 경우 할랄인증 취득 필요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와 상호인정협약을 체결한(재)한국이슬람교, 한국할랄인증원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권장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①수출신고서 ②상업송장 ③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수입허가 취득	• 일부 품목의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처에서 수입허가 취득 필요 • 대상품목: 껍질이 있는 달걀, 육류 및 기금육, 쌀, 식물성식품, 동물성 유지 ▼	
식품등록	• 말레이시아 보건부(MOH)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식품 등록 필수	
적하목록 제출	• 운송수단별 제출기한을 준수해 말레이시아 세관에 적하목록 제출 • 제출기한: 해상운송 - 도착 후 24시간 이내항공 철도 - 도착 후 요청이 있을 때	
수입신고	• '다강넷(DagangNet)' 시스템을 통해 세관에 수입신고서 및 제반서류 제출 필요 •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선하증권 ③ 상업송장 ④ 포장명세서 ⑤ 원산지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수입업체
수입검사 및 검역	• 제출된 서류에 따라 식품 위험도를 평가하며, 총 6단계로 위험도를 구분함 • 위험도별로 검사내용 상이 • 검사유형: ① 서류검사 ② 물리적검사 • 식물성 식품 및 동물성 식품은 수입검역 시행 기관이 상이 - ① 식물성 식품: 말레이시아 농업부(도착 4일 전 검역 신청 필요) - ② 동물성 식품: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검역 신청 필요)	
관세 납부 및 반출	• 상기 절차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 말레이시아로 육류 및 유제품을 수출하는 국내 수출업체는 사전에 할랄인증 취득 필요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JAKIM)로 제반서류를 제출해 할랄인증을 신청해야 함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규격 인증 취득 절차〉							
할랄인증 취득	① 회사소개서 ① 포장재의 종류 ② 사업자등록증 ② 제조 공정도 및 생산 절차 ③ 제품명 및 제품설명서 ③ 샘플 및 제품 라벨 ④ 사용된 원료의 시험성적서 ④ 원재료 리스트 ⑤ 공장·부지 지도, 작업장 평면도 ⑤ 할랄 실무자 교육 수료증 ⑥ 원료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 ⑦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필수 식품원료의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보유 시) ⑥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 법에 위배되는 소재/공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확인서 ⑤ 제조공정 중 효소를 사용할 경우 사용된 효소의 유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배양약에 대한 원료 리스트, 각 원료의 제조공정도, 균주기탁서							
	 ⑩ 할랄 제품 생산에 관한 자체 규정 자료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샘플링을 통해 실험실 분석을 실시함 - 심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할랄인증이 승인 및 발급됨 -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는 한국 할랄인증원(KHA)과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KHA 인증 및 KMF 인증 역시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될 수 있음 							
	・수출 품목에 대한 말레이시아 위생 기준·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일반 사전포장식품, 신선 농산물, 축산물 제품 등에 요구되는 위생기준·라벨링· 식품첨가물 규정 등 수입요건이 상이하므로, 국내 수출업체는 원활한 수출을 위해 품목별 수입요건을 사전에 파악해야 함							
	- 말레이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육류제품은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하며, 말레이시아 이슬람개발부가 인정한 도살장에서 도살된 제품이어야 함							
	・말레이시아 수출 시 한-아세안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필요							
원산지증명서 바그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발급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한-아세안 FTA 관세율 활용 시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완제품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수출신고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현품 검사 후 수리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 말레이시아와의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말레이시아로 감귤, 곡물류 등을 수출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출식물검사신청서 ② 검사대상식물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식물검역 ③ 수입허가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수출검역

- 수출검역 수출 상대국의 검역요건 적합 여부를 검사함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 수출식물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축산물검역의 경우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됨

③ 수출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 말레이시아 수입통관 및 검역 절차

수입허가 취득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품목에 따라 수입허가 취득 필요 △껍질이 있는 달걀 △육류 및 가금육 △쌀 △식물성 제품 △동물성 유지 △알코올 음료 등을 수입하는 말레이시아 수출업체는 수입허가를 취득해야 함 수입허가증은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 Malaysia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s) 에서 발급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시 5영업일이 소요됨 수입허가는 말레이시아 현지 법인만 취득할 수 있으며, 수입허가는 3개월간 유효함 수입허가증은 해당 품목 수입에 필요한 모든 요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이행 조건은 수출국(생산국)에서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수출업자는 수입업체로부터 수입 요건을 전달받아 파악하는 것이 권장됨
식품 등록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수입식품 사전등록 완료 필수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에 수입식품 사전등록을 완료해야 함 FoSIM은 세관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식품 수입 활동을 전산으로 관리함 말레이시아 수입식품을 사전등록한 뒤,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다음 식품에 대한 정보를 FoSIM에 입력하며, 해당 정보를 토대로 식품 위험성에 따라 자동으로 통관되는 Level 1부터, 자동 거절되는 Level 6까지 6가지 단계로 분류됨
적하목록 제출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는 말레이시아 도착 전 적하목록 제출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운송수단별 제출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말레이시아 세관에 제출해야 함 - 해상운송의 경우 도착 후 24시간 이내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항공·철도 운송의 경우 물품이 도착한 후 세관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출해야 함
수입신고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세관에 수입신고서와 기타 서류 제출 필요 - 말레이시아의 경우 관세사 제도가 없어 포워딩 업체가 관세사 역할을 함 - 말레이시아의 단일통관창구인 다강넷(Dagang Net) 전자통관 서비스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며, 수입신고서(Custom No.1 양식 사용), 선하증권 등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수입신고서에는 △상품 정보 △포장단위 및 개수 △가격 △중량 △원산지 △최종 도착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말레이시아 수입신고 제출서류〉

수입신고

- ① 수입신고서(Custom No. 1)
- ② 선하증권(Bill of Landing,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③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C/I)
- ④ 포장명세서(Packing List, P/L)
- 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필요 시)
- ⑥ 그 외 기타 필요한 서류

• 말레이시아 세관은 수입신고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심사

- ① 서류와 물품의 내용(수량, 포장 개수 등) 일치 여부 ②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 여부 ③ 수입 물품의 용도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심사함
- 말레이시아 검역처(MAQIS)는 식품의 위험도에 따라 수입검사를 진행
-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식품의 위험성을 측정하며, 총 6단계로 구분해 식품 검사 유무 및 통관 여부가 달라짐

〈말레이시아 위험도별 통관채널 검사 내용〉

수입검사 및

Level 1	수입식품 자동 통관		
Level 2	서류검사 후 통관		
Level 3	서류검사 및 실험실 분석을 위해 샘플링		
Level 4	서류검사, 샘플링 및 샘플링 완료 후 통관		
Level 5	서류검사, 샘플링, 및 샘플링 완료 후 검사 결과가 식품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화물 반출		
Level 6	수입식품 자동 거절		

- 물리검사가 시행되는 경우, 수입된 제품이 다음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물리적 검사 사항〉

- ① 해충. 질병 혹은 오염 물질을 포함 여부
- ② 포장, 등급 표시, 라벨 부착 여부
- ③ 제품 종류, 수량 등의 서류상 일치 여부
- ④ 사전처리 및 검역 진행 여부
- ⑤ 축산제품의 경우 할랄인증 취득 여부
- 검사 결과 안전하지 않은 제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수입 식품은 압수되어 폐기됨

• 식물성 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농업부에서 검역을 진행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검역소 도착 4일 전 다강넷을 통해 수입검역을 신청해야 함 - 식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 시 수입허가서(AP), 식물위생증명서, 해충검역검사 및 식물 위생 규제 준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함 - 표본검사가 시행되며, 검역기간은 최대 5일이 소요됨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농업부에 검역 비용(15링깃)을 납부하며, 검역이 승인될 경우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동물성 제품의 경우 말레이시아 수의검역부에서 검역을 진행 수입검사 및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온라인(e-Permit)이나 서면(Form A 양식)으로 수의검역부에 검역 신청서와 검역 비용을 납부해야 함 - 동물성 제품의 경우, 검역 신청 시 수입허가서(AP), 할랄(HALAL) 인증서, 수의검역부(DVS) 허가증. 육류 및 가금류 수출증서(FSIS Form 9060-5)를 제출해야 함 - 검역 승인 후 동물건강증명서가 발행되며, 승인 내역과 증명서는 세관에 자동으로 통지됨 • 가공식품의 경우 별도로 진행되는 검역 절차는 없음 - 검역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말레이시아 검역처에서 식품첨가물 검사 등 식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 말레이시아 수입업체는 관세 및 기타 제세를 납부하고 물품 반출 - 수입품에 따라 적용되는 관세 기준은 대부분 20~30%의 종가세를 적용하나 품목에 따라 종량세를 부과하기도 함 -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자국 제조 산업의 육성을 위해 농산품, 담배, 음료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수입 통관 시 수입 관세를 납부하고 판매세 및 소비세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 맥주, 포도주, 알코올 제품에는 20%의 소비세가 부과되며, 품목별 판매세, 100ml당 5g 이상의 설탕을 함유한 음료 및 설탕 및 향료가 첨가된 청량음료에 부과되는 설탕세 등을 납부해야 함 - 제조업체가 직접 제조과정에 사용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이 취급하지 않는 소재, 부품, 포장 소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관세를 면제함

● FTA 체결현황

표 10. 말레이시아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발효 및 서명) ASEAN 전체차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일본, 파키스탄, 인도, 뉴질랜드, 칠레, 호주, 튀르키예, CPTPP, RECP	EU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5.01. 조회 기준

표 11.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 중	재개개시 여건 조성
한-ASEAN FTA RCEP	해당사항 없음	한-말레이시아 FTA	해당사항 없음

^{*} 주: 2025.0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물류: 쌀(백미, 현미, 흑미), 보리, 밀, 수수, 콩, 팥, 녹두, 옥수수
- 과실류: 감(단감), 밤, 복숭아, 배, 사과, 유자, 참다래, 포도, 감귤, 망고, 자두
- * 감귤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부기사항란에 ①수입허가서 번호, ②감귤그린병(Citrus greening) 및 과실파리(Fruit fly) 무감염 사항 기재
- 특작류 : 인삼
- 채소류: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딸기,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쑥갓, 아욱, 마늘
- 종자류 : 가지, 고추, 당근, 무, 멜론, 브로콜리, 배추, 상추, 수박,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토마토, 파, 호박
- 버섯류 : 느타리, 만가닥, 송이, 새송이, 양송이, 영지, 표고, 팽이
- 절화류 : 국화,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심비디움, 장미, 카네이션, 튤립, 팔레놉시스
- 화훼류 기타(재배매체 포함) : 글라디올러스, 난초, 백합, 선인장(접목선인장), 심비디움, 장미, 철쭉속, 카네이션, 튤립

• 축산물

- 개사료, 우유 및 유가공품, 소 정액, 쇠고기, 멸균 돈육 가공품
 - * 2022년 6월 기준, 위생조건에 따라 냉동 쇠고기만 수출 가능
 - * 쇠고기 수출 시 럼피스킨 질병 발생(23.10.19~)과 관련하여 과거 12개월 간 농장 비발생 조건 준수하여야 함

³⁾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_농림축산검역본부(2024), https://www.qia.go.kr/listWebQia3WGJYYQ.do?clear=1

₹0 140

다 된 전 표 다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감귤 묘목, 국화묘, 옥수수종자, 딸기묘
 - * 주요 신선·건조 농산물 중 수출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은 없음

◆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각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표 12.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Komart (말레이시아)	
업체 유형	한인마트	
담당자명	Mr. Shamini (관리책임자)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가장 인기 있는 한국 식품은 섭취하기 편리하고, 강렬한 맛을 가진 라면임. 한국산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선 농산물보다 가공식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음
- 김치도 맛과 풍미로 상당히 인기가 많음.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김치에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면 품질 높은 한국산 무와 배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은 직접 김치를 담구어 먹기도 함. 깻잎도 일부 수요가 있음
- 한국산 신선 농산물은 말레이시아에서 몇 가지 품목이 판매되고 있지만, 아직 수요가 두드러지지 않음. 과일 중에서 배와 포도가 시장성이 있으나 비교적 가격이 높고 공급량이 제한적이어서 일부 시장에서만 제공됨
-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임. 따라서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품질의 식품 안전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 수입 시 애로사항

-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수입 식품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식품 관련 검사임. 일례로 말레이시아는 농식품을 수입할 때 농약 잔류물과 오염 물질 여부 검사를 실시해 오염된 식품이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단계를 거침. 이는 주로 신선 농산물, 육류, 해산물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음. 수입 시 필요한 검사는 수입 과정이 오래 걸리게 하고, 때로는 지연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함.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부패하기 쉬운 제품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그에 맞추어 규제 검사를 시행하며, 최근 수년에 걸쳐 수입 절차가 간소화되어 이러한 수입업체의 위험이 줄어듦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 주요 SPS 내용

- 말레이시아는 신선 베델잎, 신선 고추, 신선 두리안 수입 시 신규 수입요건을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함
- 유전자변형작물은 오직 식품 및 사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될 때만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판매가 허가됨. 말레이시아는 소량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와 대두 판매를 허가했으며, 2013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가공식품을 포함해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라벨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실효 되지는 않음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s://hq.moh.gov.my/fsq/peraturanperaturan- makanan-1985	
식품 첨가물 허용치 식품 규정 1985에 따른 부칙		https://hq.moh.gov.my/fsq/peraturanperaturan- makanan-1985	
유전자 변형 식품 라벨링 지침		https://hq.moh.gov.my/fsq/garis-panduan- pelabelan-makanan	

● 통보문 개정현황(2024년)

• 자킴(JAKIM) 할랄 국제인증 신청요건 강화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말레이시아의 할랄개발부(JAKIM)는 해외 제조를 하는 말레이시아 기업에 대한 할랄인증 신청 요건을 강화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해외 제조를 위한 자킴(JAKIM) 할랄 국제인증은 식품, 화장품, 제약, 소비재, 의료기기의 5개 분야로 구분되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할랄인증서 유효기간 2년) 자킴(JAKIM)에 해외제조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의 지사, 자회사, 수입업체, 공급업체, 무역업체, 말레이시아 대행업체임 신청요건 변경 주요 내용 획득절차는 온라인으로 신청 → 서류 제출 → 수수료 납입 → 현장실사 및 샘플링 분석 → 인증서 승인 → 인증서 발급 등으로 진행됨 이번 개정에서 신청자와 제조공장은 할랄 보증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MPPHM) 2020 절차 매뉴얼(현지 내수용)및 말레이시아 할랄 관리 시스템(MHMS) 2020에 따라 구현해야 함을 명시 신청 필수서류가 10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남 말레이시아에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자킴(JAKIM) 할랄 인증 마크 또는 상호 인정되는 할랄 인증 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되며 우리나라는 한국이슬람교 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됨
통보일	2024년 1월 1일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ld=NTB0203700

• 음료 영양등급제 도입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설탕 소비를 줄이기 위해 2019년 설탕 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한데 음료에 대한 영양 등급제 도입을 추진 중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2024년 8월 영양등급제가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설탕 소비 억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음료 등급제 검토 과도한 설탕 섭취로 인한 비만, 심혈관 질환과 같은 비전염성 질병(NCD)의 증가를 막기 위해 음료 등급제 검토 싱가포르와 유사한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나 구체적인 실행 일정은 밝히지 않음 음료 설탕세 인상 계획 멀레이시아는 2019년부터 가당 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도입함 설탕 함량이 100ml 당 5g을 초과하는 음료, 100ml 당 설탕이 12g을 초과하는 과일주스나 아채 음료 대상 설탕 소비세는 리터당 40센트(0.4링깃)를 부과하다 2024년 50센트(0.5링깃)로 인상한 바 있는데 '소매가격의 20%' 인상이 검토되고 있음 구체적인 대상 음료는 확정되지 않음 	
통보일	2024년 8월	
시행예정일	미정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 do?ntmld=NTB0203699	

(2) TBT

♪ 주요 TBT 내용

•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발표한 주요 TBT 규정 내용 없음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본부	https://hq.moh.gov.my/fsq/garis-panduan- pelabelan-makanan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및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 제품명 • 용량 • 성분	• 제조사 및 수입업체 • 원산지 • 영양성분	• 유통기한 • 기타 정보 및 금지사항 • 할랄 관련 사항	
	표기언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제조/포장하는 경우 말레이시아어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함께 적을 수 있음		
		수입식품은 말레이시아어 또는 영어	로 표기하며 다른 언어를 병행하여 표기할 수 있음	
	제품명	제품의 명칭은 원재료의 일반 명칭 또는 학명으로 표기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성분	중량에 따른 내림차순으로 기재되어야 함		
(가이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유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시해야 함		
		돼지고기/돼지기름 또는 알코올을 합 표시해야 함	함유한 경우 '돼지고기 함유' 또는 '알코올 함유'로	
		식품에 식용지망, 식용유 또는 둘 다 어디에서 유래 된 것인지 표시해야	· 포함하는 경우, 동물성인지 식물성인지, 기름이 함	

	제조사 및 수입 업체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주소, 연락처, 정보를 기재해야 함		
	원산지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의 정보와 함께 원산지 정보도 기재해야 함		
		영양성분은 100g(ml) 당 및 1회 제공분에 대한 형태로 표기해야 함		
		열량, 단백질, 탄수회물 및 지방은 필수로 표기해야 함		
	영양성분	다음 식품은 영양 식품을 필수적으로 표기해야 함 - 조리된 시리얼과 빵 - 밀가루 과자 - 통조림 고기, 생선, 야채 - 통조림 과일 및 다양한 과일 주스, - 샐러드 드레싱 및 마요네즈 - 청량음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	갑각류 및 조개류, 계란, 생선, 우유, 땅콩, 간장, 견과류, 글루텐, 아황산염		
라벨 표기사항	유통기한	유통기한은 '일/월/년' 또는 '월/년' 순으로 표기해야 함		
(가이드)		유통기한의 글자 크기는 6포인트 이상이어야 함		
	기타	식품 요소의 그림은 라벨에만 기재함		
		섭취 방법을 기재할 경우 'SERVING SUGGESTION'또는 'RECIPE'라고 대문자로 글자 크기 6포인트 이상으로 제품이미지와 가깝게 표기		
		로고는 관할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인증이어야 하며, 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라벨 기본 요건	라벨 표시 및 광고는 샤리아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샤리아 법에 위배되는 음란함을 강조해서는 안됨		
		품질에 관한 문구는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모든 라벨은 추가적인 포장 위에 덧붙여 있어야 함		
	할랄	할랄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제품 라벨에 말레이시아 할랄 로고를 표기할 수 있음		
	관련 사항	포장재는 나지스(Najis)로 분류되는 재료로 만들어서는 안됨		

관련 기관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르지 않는 한 등급, 품질, 우수성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표기할 수 없음

규정에 따른 강도, 순도, 품질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면 "순수한(pure)"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합성(compounded), 약물첨가(medicated), 강장(tonic), 건강(health)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음

다음의 부재에 대해 표기할 수 있음

- (a) 쇠고기, 돼지고기, 부산물, 라드, 첨가된 알코올이 첨가되지 않은 경우
- (b) 본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첨가물 또는 영양보충제

다음의 표기는 금지

- (a) 특정 식품이 모든 필수 영양소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공급원이라는 내용
- (b) 균형 잡힌 식단이나 다양한 음식의 섭취가 모든 영양소를 적절히 공급할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
- (c) 입증할 수 없는 내용
- (d) 식품이 질병, 장애 또는 다른 생리학적 기능을 예방, 완화, 치료 또는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
- (e) 소비자가 유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게 하는 내용
- (f) 소비자의 두려움을 유발하거나 이용하는 내용

유기농의(organic), 효소가 함유된(biological), 환경친화적인(ecological), 생체역학의 (biodynamic) 또는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는 관련 규정인 Malaysian Standard MS 1529를 준수한 식품의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음

- 해당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별 식이요법 (special dietary)"이라는 단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타 용어
- "통곡물(wholegrain)" 또는 "통밀(wholemeal)"이라는 단어(단. 식품에 다음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 a. 밀가루, 쌀가루, 쌀 또는 곡물의 경우 통곡물 또는 통밀 100%
- b. 빵의 경우, 통곡물 또는 통밀 60% 이상
- c. 기타 제품의 경우, 1회 제공량당 통곡물 또는 통밀 25% 또는 8g 이상

* 자료: 말레이시아 보건부(MOH)

표기사항

금지사항

452 2024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 비건 냉동만두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올그루 야채 군만두				
원재료명	밀가루 36%, 두부, 양파 11%, 대파 10%, 부추 7%, 대두단백, 옥수수유, 당면, 무말랭이 2%, 옥수수전분, 마늘, 소금, 설탕, 생강, 참기름, 후춧가루, 글루타민산나트륨, 유화유				
내용량	540g(18 x 30g)				
저장방법	냉장보관: 1일 냉동 (~6℃): 일주일 냉동 (-2℃): 한달 냉동 (-18℃): 전면 별도 표시일까지				
유통기한	전면 별도 표시일까지				
알레르겐 주의 성분	대두단백, 글루타민산	나트륨			
제조사	GMF CO., LTD.				
수입자	Kreyenhop & Kluge	GmbH & Co. KG			
	1회 제공량 100g				
	열량(Kcal) 706kJ / 168kcal 당류 2.4g				
영양성분 정보	지방 5.6g 식이섬유 1.8g				
	포화지방	2.0g	단백질	5.6g	
	탄수화물 26.0g 나트륨 0.5g				

• 떡볶이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츄릅떡볶이			
원재료명	- 떡(쌀 99%), 소금(0.99%), 산도조절제(E330)(0.01%), - 시즈닝: 백설탕, 고춧가루, 소금, 말토덱스트린, 양파분말, 표고버섯분말, 식물성크림 (옥수수시럽, 유청분말, 유당, 우유크림, 코코넛오일, 백설탕, 카제인나트륨, 레시틴, 카라기난), 파 분말, 글루타민산나트륨(E621), 간장가루(콩), 올레오레진 파프리카, 마늘분말, 생강분말, 후추분말, 구연산(E330)			
내용량	떡 140g, 소스 20g			
출시일(발행일)	2022. 01. 14			
저장방법	서늘한 곳에 보관			
제조사	Boon Lee Food Inde	ustries		
알레르겐 주의 성분 및 첨가물	콩, 코코넛, 밀, 우유, 식품 컨디셔너로 허용된 산도 조절제, 유화제, 향미 증강제 및 향산화제를 포함함			
	제공량 140g 당			
영양성분 정보	열량(Kcal) 370kcal 총당분 7g 지방 7g 단백질 7g 포화지방 2g 비타민D 0 mcg 트랜스지방 0g 칼슘 15mg 총콜레스테롤 72g 철분 2mg 나트륨 660mg 칼륨 140mg			
제조사	OKI Restaurant System Co.,LTD			

● 인증

[필수 인증]

• SIRIM 인증

- SIRIM 인증은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유통하고자 하는 제품이 말레이시아 표준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함을 인증기관인 SIRIM을 통해 확인받은 것을 의미함. SIRIM 인증은 제품 품질 및 안전이 입증 제품만 말레이시아 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인증으로, 임의인증이 원칙이며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품목만 의무인증 대상임. 식품의 경우 임의인증 품목에 해당되며 말레이시아 내 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증이 가능함. 단,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직접 규정을 제시하여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음.
- 인증 발급은 자발적이지만, 일부 품목(설탕, 밀가루, 칠리소스, 인스턴트 면류 등 가공식품 일부)에 대해서는 말레이시아 수출 시 의무적으로 SIRIM 마크를 획득해야 함

인증명	· SIRIM 인증		
인증기관	・말레이시아 표준산업연구원(SIRIM,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of Malaysia)	•	
시험 및 인증대행기관	• SIRIM QAS International Bhd	MS	
강제유무	• 필수 인증(일부 품목)	SIRIM	
제출 서류	• 인증 질의서(Questionnaire) 및 신청서, 관계당국의 승인 문서, 상표 및 제품명에 관한 승인서, 제조업체 정보		
소요기간	· 약 2개월 이상		
유효기간	•1년		
절차	・인증 문의 → 인증 신청 → 서류 심사 → 현장실사 →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인증서 발급		

• JAKIM 할랄 인증

- 말레이시아는 인구 60%이상이 무슬림인 거대 할랄 시장이며, 무슬림 인구의 올바른 할랄 식품 섭취를 위해서 인증을 도입함. 육류 및 육류기반의 제품은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며, 이외 식품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임. JAKIM 할랄 인증 신청 대상자로는 제조업체, 포장업체, 도축업장, 물류업체 등이 있으며 인증대상으로 모든 식품 가공 산업뿐만 아니라 도축장이나 식당·연회 서비스업체까지도 적용됨. 할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슬람율법과 관련사항에 대한 말레이시아 지침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말레이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할랄 제품들은 JAKIM 할랄 인증 또는 JAKIM과 교차 인정되는 할랄 인증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JAKIM 할랄 인증과 교차인정이 가능한 외국 할랄 인증기관은 약 40개국 70여 개 이상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의 할랄 인증도 해당됨. 교차인정이 가능함에도 말레이시아 무슬림 소비자들에게는 JAKIM에 대한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마케팅의 일환으로 JAKIM의 할랄 인증을 직접 받는 경우가 다수 있음

인증명	· JAKIM 할랄 인증		
발행 및 검사기관	・JAKIM(말레이시아 이슬람 개발부)		
강제유무	• 필수(육류 제품), 권장(기타 식품)		
제출 서류	회사명, 사업자등록증, 제품명과 제품설명 등 기본 정보 식품원료의 할랄 상태, 식품원료 설명서 또는 할랄 인증서 (있는 경우) 제조과정 순서도와 생산 절차 HACCP, ISO, GHP, GMP, TQM 등과 같은 다른 인증서 육류 및 육류 기반 제품용 말레이시아 수의국의 수입허가서 사본 도축장을 위한 수의국 발급 수의학 건강증명서(VHC) 기간이 만료된 할랄 인증서 사본(있는 경우)		
소요기간	• 해외 신청 3개월, 일부 인증 23일		
유효기간	· 2년		
절차	• 온라인 접수 → MYeHALA 신청 → 지원검토·서류검사 → 감사 일정 → 현장검사 → 샘플링 분석 → 감사 보고서 작성 → 할랄인증 패널미팅 → 할랄 인증서 발급		

04 수출 애로사항

● 할랄 인증 절차 변경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관련품목	식품 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2024년 1월 1일부터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가 변경됨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의 지사, 자회사, 수입업체, 공급업체, 무역업체, 말레이시아 대행업체만 신청이 가능함 자킴 할랄 인증은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되며, 한국의 경우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과 상호 인증됨 신청서 1개당 1개의 공장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00개 제품까지 등록할 수 있음 공장 실사는 최소 4일이 소요되며, 모든 원자재 또는 성분에 대한 제품 사양 및 할랄 인증서가 필요함 발급된 할랄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함
애로 사항	• 말레이시아 자킴(JAKIM) 할랄 인증 관련하여 개정되어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기타	※ 말레이시아 자김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변경 https://www.kati.net/board/exportNewsView.do?board_seq=100609&menu_ dept2=35&menu_dept3=427&dateSearch=year&srchFr=&srchTo=&srchTp=0& srchWord=%EB%A7%90%EB%A0%88%EC%9D%B4%EC%8B%9C%EC%95%84 &page=1&srchGubun=427

▶ 말레이시아 라벨링 등 표시 변경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관련품목	가공식품
유형*	TBT
	• 말레이시아 식품안전품질부가 「식품 규정(개정)(No.4) 2020」을 발표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 식품 첨가물은 기능과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 안에 명칭 또는 INS 번호를 표시해야 함
주요	• 영양 성분 표시 요건이 확대되어 총 설탕의 양을 100g/100ml당 또는 포장당 g으로 표시해야 함
내용	· 설탕 무첨가 표시가 있는 경우 자연 발생 당 함량을 1회 제공량당 표시해야 함
	• 영양 기능 강조 표시에는 질병 치료 효과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없음
	• 유기농, 생물학적, 생태학적, 바이오다이나믹 등의 용어는 말레이시아 당국의 승인이 필요함
애로 사항	• 식품 첨가물 라벨링, 영양 표시 등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제품의 라벨 수정이 필요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 규정 원문 https://hq.moh.gov.my/fsq/xs/dl.php?filename=P.U.%28A%29+299+Peraturan- Peraturan+Makanan+%28Pindaan%29+%28No.4%29+2020.pdf

♪ 가공식품 내 사용 금지 첨가물

해당국가	말레이시아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SPS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말레이시아 식품 규정 1985》에 트랜스지방산 함량 제한 관련 ' 신규 조항 38B'를 추가할 예정임
	・WHO의 권고사항에 따라 산업적으로 생산된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을 총지방 함량의 2% 이하로 제한함
주요 내용	· 규제 대상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이며, 마가린, 쇼트닝 등의 유지제품과 이를 사용한 과자, 도넛, 비스킷 등의 가공식품이 해당됨
	• 트랜스지방산은 부분 경화유(PHO)와 반추 동물의 고기, 기름, 유제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동물성 트랜스지방산으로 구분됨
	• WHO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산의 과다 섭취는 비전염성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일 수 있음
애로 사항	• 트랜스지방산 함량 규제로 인해 기존 제품의 원료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생산 비용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음
기타	※ 규정 원문 https://eping.wto.org/en/Search/Index?viewData=%20G/SPS/N/MYS/57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발효유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유제품 관련 현지 식품 위생 법령 확인
- 발효유 제품의 기능성 표시 가능 여부
- 프로바이오틱스 및 헬리코박터 표현 가능 여부
- 제품 원료성분의 수출 가능 여부

♪ 제품 조사 결과

- 제품 분류 및 HS CODE
 - 유제품인 HS CODE 040320 요구르트는 다음과 같은 관세율이 적용됨
 - 말레이시아로 수입하려는 우유 및 유제품은 수의학 서비스부(DVS)에 등록해야 하며, 승인된 시설과 제품은 DVS 시스템에 등록됨
 - 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MAQIS) 담당관은 수입허가 발급을 위해 수의학 서비스부(DVS) 승인을 받아야 함

HS CODE	해당	수입세율	판매 및 서비스세(SST)
040320	요거트	0%	0%
0403201100	과일(펄프 및 잼 포함), 견과류 또는 코코아가 첨가된 제품	0%	5%
0403201900	기타	0%	0%
0403209100	과일(펄프 및 잼 포함), 견과류 또는 코코아가 첨가된 제품	0%	5%
0403209900	기타	0%	0%

• 발효유 관련 규정

- 배양유 또는 발효유라 함은 저온살균우유, 멸균우유, 탈지유, 재조합유, 저온살균크림 또는 환원크림을 적합한 유산균과 함께 배양하여 제조한 것을 말함(요거트, 배양크림 또는 사워크림이 포함)
- 배양유 또는 발효유:
 - ① 유기체의 살아있는 배양물을 포함할 수 있음
 - ② 우유 고형분, 허용된 감미료, 소금 및 과일을 첨가할 수 있으며 젖산으로 계산하여 산도가 0.5% 이상이어야 함
 - ③ 배양유 또는 발효유에는 허가된 착색료, 허가된 향료 및 허가된 식품첨가제를 함유할 수 있음
 - ④ 발효유가 들어 있는 포장의 라벨에는 "발효유"라는 문구가 기재되어야 함

• 프로바이오틱스 배양 관련 규정

- "프로바이오틱 배양물"은 적절한 수로 투여했을 때 숙주에게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의미함
- 제12A 부칙에 명시되거나 국장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배양균은 프로바이오틱 배양균이어야 함
-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균을 식품에 첨가할 수 있음
- 첨가된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균은 생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 동안 생존 가능한 프로바이오틱스 수치가 10℃fu/ml 또는 cfu/g 이상이어야 함
- 프로바이오틱스 배양물에는 전염성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포함되어서는 안 됨
-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균을 첨가한 식품의 포장표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 ① "PROBIOTIC CULTURES의 (수량)을 포함합니다"라는 단어
 - ② 프로바이오틱스 배양균의 속, 종, 계통의 규격과 포장 개봉 전후의 보관 방향
- 프로바이오틱스 배양물의 증식 및 유지에 사용되는 배지가 동물에서 파생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일반 이름은 "사용된 배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해당 식품 라벨에 표시해야 함. "(해당 동물의 일반명) 에서 유래된 프로바이오틱스 배양물의 전파를 위해"
- 프로바이오틱 배양균이 첨가된 식품 포장의 라벨에는 "프로바이오틱 배양균이 장 또는 장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가 기재될 수 있음

• 수의학 서비스부(DVS) 유제품 등록 절차

- 말레이시아 농업 및 농업 산업부 내의 수의학 서비스부(DVS)는 2018년 3월 31일부터 수입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시설 및 제품 등록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이 조치에 따라 외국 생산자 및 수출자는 유제품 수입 화물에 대한 수입 허가를 받기 전에 DVS로 신청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수의학 서비스부(DVS) 유제품 제조시설 및 낙농시설 등록을 위한 절차:
 - ① 말레이시아로 수출 이력이 있는 시설의 경우: 신청서에 대한 약 2주 검토 기간이 소요됨
 - ② 말레이시아에 수출이력이 없는 시설일 경우: 신청서에 대한 약 3-6개월 검토 기간이 소요됨
- 수의학 서비스부(DVS)에 시설이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입허가가 발급되지 않음
- 등록이 된 후에는 E-Dagang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입자 등록, 수입허가를 진행하며 말레이시아 검역 검사청(MAQIS)을 통해 원산지 검사를 함
- 수입자 검토 시 수의학 서비스부(DVS)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업체인지 확인이 필요함
- 수의학 서비스부(DVS) 유제품 등록은 www.dvs.gov.my 웹사이트에서 진행 가능

• 제품 성분 검토 결과

- 제품의 원료 성분을 검토한 결과, 일부 성분에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발견됨:
 - ① HP7 Lactobacillus, HY7013 Lactobacillus, HP7 Probiotic, HY7013 Probiotic: 말레이시아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 프로바이오틱스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② Isomalto-oligosaccharide: 말레이시아 허용 첨가 영양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③ Oligo powder(isomaltooligosaccharide): 말레이시아 허용 첨가 영양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 ④ Cyclodextrin(alpha): 말레이시아에서는 cyclodextrin(beta)가 최대 5mg/kg까지 사용 가능함

♪ 자문 결과

- 몇몇 성분은 통관 시 허용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말레이시아 검역 담당자에게 제품 성분을 제출 하여 검토가 필요함
- HS CODE에 따라 해당 제품은 말레이시아로 우유 및 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수입 전수의학 서비스부(DVS)의 시설 및 제품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수의학 서비스부(DVS) 시설 등록 및 제품등록을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요함
- 유제품의 경우 제조시설 등록과 할랄인증 등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 제조시설에서 투자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지시장조사와 바이어와의 협의를 통해 시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됨

- 제품에 프로바이오틱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먼저 말레이시아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에 제품 분류를 신청하여 말레이시아 규정에 따른 제품 카테고리를 확인해야 함. 건강기능식품 (Health supplement)으로 판단되면 해당 제품은 수의학 서비스부(DVS) 절차를 거치기 전 국립 의약품규제기관(NPRA)에 등록되어야 함
-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등록이 불필요하며, 수의학 서비스부 (DVS) 절차를 진행하고 수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음

(2) 건강기능식품

◆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말레이시아에 수출 시, 말레이시아의 수입위생조건에 제품의 원재료들 부합 여부 확인

♪ 제품 조사 결과

- HS CODE 및 관세율 검토
 - HS CODE 2106.90을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해당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부 코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한국 관세사와 확인 필요

HS CODE	정의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AKFTA)	수입 세율	판매 및 서비스세 (SST)	특별소비세
2106.90.1100	건조 두부 및 건조 두부 스틱	0	15%	0%	
2106.90.1200	신선한 두부(두부)	0	15%	0%	
2106.90.1900	기타	0	15%	0%	
2106.90.2000	분말 형태 알코올	0	20%	10%	
2106.90.3000	식물성 크리머	0	15%	5%	
2106.90.4100	분말 형태	0	20%	5%	
2106.90.4900	기타	0	20%	5%	
2106.90.5300	인삼 기반 제품	0	0%	5%	100 그램 당 RM 0.47
2106.90.5400	혼합 농축식품용 원재료	0	0%	5%	

HS CODE	정의	아세안-한국 자유무역협정 (AKFTA)	수입 세율	판매 및 서비스세 (SST)	특별소비세
2106.90.5500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복합 농축물	0	0%	5%	
2106.90.5900	기타	0	0%	5%	100 그램 당 RM 0.47
2106.90.6100	주류 제조용, 액상 형태	0	20%	10%	
2106.90.6200	주류 제조용, 기타 형태	0	20%	10%	
2106.90.6400	주류 제조용, 액상 형태	0	20%	10%	
2106.90.6500	주류 제조용, 기타 형태	0	20%	10%	
2106.90.6600	주류, 액상 형태	0	20%	10%	
2106.90.6700	주류, 기타 형태	0	20%	10%	
2106.90.6900	기타	0	20%	10%	
2106.90.7100	인삼 기반 건강보조식품	0	0%	5%	
2106.90.7200	기타 건강보조식품	0	0%	5%	
2106.90.7300	강화제 프리믹스	0	15%	5%	
2106.90.8100	락타아제 결핍 영유아용 식품	0	0%	0%	
2106.90.8900	기타	0	0%	0%	
2106.90.9100	화학물질과 식품 혼합물	0	15%	5%	
2106.90.9200	향미 또는 착색 시럽	0	15%	5%	
2106.90.9300	코코넛 밀크 (분말형 포함)	해당 없음	15%	5%	
2106.90.9500	세리 카야 (말레이 전통 잼)	0	15%	0%	
2106.90.9600	기타 의료용 식품	0	15%	5%	
2106.90.9700	템페 (발효 콩 식품)	0	15%	0%	
2106.90.9800	기타 향료 제품	0	15%	5%	
2106.90.9900	기타	0	15%	5%	

• 가공식품 관련 규정

- 가공식품은 수출국 식품 당국의 적절한 감독 하에 제조되어야 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 포장된 미네랄이나 식수/얼음, 코코넛 밀크, 유아용 시리얼 및 조제분유, 최소 가공된 과일 및 채소, 저온살균 우유(액상), 절단 사탕수수, 월병 등 수입 시 서류 첨부를 요구함
- 위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HACCP 인증서, GMP 인증서, 건강증명서, 수출증명서, 제조 공장 면허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제품 성분 검토 결과

- 제품 성분 분석 결과, 모든 성분이 허용되는 것으로 확인

♪ 자문 결과

- 해당 성부표에 따르면 금지되는 성분은 검토되지 않아 본 제품은 말레이시아로 통관 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음
- 해당 HS CODE 2106.90.9099는 말레이시아 시스템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한국 관세사와 함께 말레이시아에서 통용되는 HS CODE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 해당 성분 중 Mistletoe Extract powder의 경우 활성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에 활용되는 것으로 검토됨. 일반식품으로 분류될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지는 말레이시아 식약처(NPRA) 제품 분류 서비스를 받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됨
- 식약처(NPRA) 결과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될 시 제품사전등록이 필요하며, 제품 승인 후에 말레이시아로 수입이 가능함